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나. 개정 내용

- 영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으로 신설된 자치단체 추가로 “시·도지사”의 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등(안 5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한 기준, 대피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개정 내용

-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한 기준 설정
 - (산불)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불) 위험등급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이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사태등) 위험등급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주민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 산림청장의 주민대피계획 보완 요청,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의 지역주민 알림, 대피계획 시행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으로 대피 현장 작동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산불방지를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명시(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산불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범위, 산불방지 입목 제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나. 개정 내용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 시설물 주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입목 제거를 위한 시설물의 범위 설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①국가유산,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의 ②국가중요시설, ③기타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시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기준 설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 ①입목 제거를 위한 계약 체결, ②시설물 인근 입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③산불예방·진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④기타 제거 필요성이 적은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산불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를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안 제39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의무 이수 횟수(임기 중 2회 이상) 등 명시
- * 산림재난방지 체계, 산림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역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이수를 통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산림재난방지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의 보완요청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은 산림청장이 관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과태료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9조, 별표 6 개정)

가. 개정 이유

-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과태료 상향에 따른 조문 및 별표 정비

나. 개정 내용

- 산불예방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설정(안 제49조)
 - (법률 상향) 과태료 최대 부과액을 200 → 300, 70 → 100, 30 → 70만원
 - (위반 횟수별) 1차는 최대 부과액의 1/3 부과

위반행위	구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현행	5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현행	2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현행	5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현행	20	40	70
	개정	30	50	100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현행	10	20	30
	개정	20	30	70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현행	10	20	30
	개정	20	30	7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산불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산불 예방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 고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사항('26.11.13 시행)

현행	개정
<신설>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 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 지침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
구·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

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7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
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
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
한 사람

<신설>

⑦ -----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 등-----
-----.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
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300만원-----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
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
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료를 부과한다.

④ -----

-----100만원
-----.

⑤ -----
-----70만원-----
-----.

1.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